

## 7. 土地去來契約許可區域指定

건설교통부공고제1997-310호 1997. 9. 6

### 주요 내용

#### 1. 대상지역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지역중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함

시·도	대 상 지 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기 허가구역 제외) 국제화를 위한 5개전략 거점개발 지역으로 아래 지역중 기 허가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강서구 방화동, 마곡동, 가양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양천구 신월동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중동, 망원동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중구 순화동, 을지로 2가, 중림동, 만리동1가, 봉래동 2가, 남대문 로 5가 용산구 후암동, 동자동, 서계동, 갈월동, 남영동, 문배동, 신계동, 이촌동,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 청파동 1가, 2가, 3가, 용산동 1가, 3가, 5가, 한강로, 2가, 3가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도	대 상 지 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기 허가구역 제외)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죽림동, 식만동, 죽동동, 봉림동, 성북동, 동선동, 눌차동, 천성동, 대향동 기장군 기장읍, 정관면, 철마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기 허가구역 제외) 달성군 화원면, 가창면, 다사면, 옥포면, 논공면, 현풍면
인천광역시	동·남·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기 허가구역 제외) 중구 운남동·중산동·운서동·운북동·무의동·덕교동·울왕동·남북동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기 허가구역 제외) 서구 유촌동, 치평동, 내방동, 쌍촌동 북구 동림동, 매곡동, 연제동, 신흥동, 용두동, 용전동, 생룡동, 월출동 광산구 송정동, 황룡동, 도산동, 선암동, 운수동, 서봉동, 박호동, 소촌동, 우산동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태화동, 다운동 남구 달동, 삼산동, 무거동, 옥동 북구 화봉동, 연암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가대동, 신천동, 중산동, 상안동, 천곡동, 달천동, 시례동, 무룡동, 구유동, 정자동, 신면동, 대안동, 당사동, 신현동, 신하동, 어물동 울주군 은산읍, 언양읍, 서생면, 은양면, 청량면, 웅촌면, 범서면, 삼남면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기 허가구역 제외) 효동, 천동, 가오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하소동 중구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기 허가구역 제외) 무수동·구완동·침산동·목달동·정생동·어남동·금동

시·도	대 상 지 역
	<p>서구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기 허가구역 제외)</p> <p>유성구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기 허가구역 제외)</p> <p>    탑리동, 용산동, 봉산동, 관평동, 송강동, 금고동, 대동, 금탄동, 신동, 둔곡동, 구룡동</p> <p>대덕구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기 허가구역 제외)</p> <p>    석봉동, 목상동, 문평동, 신일동, 덕암동, 상서동, 평촌동, 옹호동, 이현동, 갈전동, 부수동, 황호동, 삼정동, 장동, 미호동</p> <p>    법·중리동(기 허가구역 제외)</p>
경기도	<p>성남시</p> <p>    수정구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 둔전동, 신흥동, 금토동, 사송동</p> <p>    중원구 하대원동, 갈현동, 여수동, 도촌동</p> <p>    분당구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구미동,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율동, 하산운동</p> <p>의정부시 신곡동, 용현동, 장암동, 금오동, 민락동</p> <p>안양시 안양동, 미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p> <p>부천시</p> <p>    원미구 심곡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상동</p> <p>    소사구 송내동</p> <p>    오정구 삼정동, 내동</p> <p>평택시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p> <p>동두천시 지행동, 생연동, 동두천동</p> <p>고양시</p> <p>    덕양구 토당동, 신평동, 대장동, 내곡동, 화정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행신동, 주교동, 신원동, 원당동, 원흥동, 도내동, 성사동</p>

시·도	대 상 지 역
	<p>일산구 식사동, 일산동, 장항동, 백석동, 산향동, 탄현동, 대화동,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풍 동</p> <p>과천시 갈현동,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 관문동, 막계동</p> <p>구리시 인창동, 교문동, 수택동</p> <p>군포시 대야동</p> <p>용인시 기흥읍, 수지읍</p> <p>파주시 금촌동, 아동동, 금능동, 김산동, 맥금동            문산읍</p> <p>이천시 장호원읍</p> <p>양주군 회천읍, 주내면, 백석면, 남면</p> <p>연천군 연천읍, 신서면</p> <p>포천군 포천읍, 군내면, 소흘면, 영종면, 영북면</p> <p>안성군 안성읍</p>
강원도	<p>춘천시 신동면</p> <p>동해시 천곡동, 송정동, 어달동, 지흥동, 효가동, 동진동, 나안동, 북            평동, 구미동, 추암동, 대구동, 단봉동, 이도동, 망상동</p> <p>속초시 전지역</p> <p>삼척동 동지역 및 근덕면</p> <p>삼척시 원덕읍 갈남·노곡·임원·호산·월천리</p> <p>홍천군 남면</p> <p>양양군 강현면</p>
충청북도	<p>청주시 용암동·가경동의 녹지지역</p> <p>충주시 달천동, 용관동, 용두동            주덕읍, 상모면, 이류면</p> <p>청원군 문의면</p> <p>괴산군 연풍면</p>

시·도	대 상 지 역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쌍신동·월미동·금홍동·무룡동·월송동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아산시 탕정면, 둔포면, 영인면, 신창면 서산시 동지역 및 대산읍 태안군 태안읍 서천군 장항읍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내홍동, 수송동, 나운동, 미룡동, 소룡동 옥구읍, 성산면, 옥도면, 옥서면 완주군 삼례읍, 봉동읍 장수군 장계면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상 동, 산정동, 옥암동 여수시 경호동(기허가구역 제외) 순천시 풍덕동, 조례동, 왕자동 나주시 운곡동·동수동·오량동·진포동(기 허가구역 제외) 자주시 왕곡면 여천시 웅천동 영암군 학산면, 미암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이동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경주시 충효·황성·용강·동천·구성·시래·시동 감포읍, 안강읍 김천시 아포읍 구미시 봉곡동, 진평동, 인의동, 황산동, 신동, 구평동 선산읍, 고아면 상주시 신봉동·가장동 화북면 문경시 유곡동, 불정동, 공평동, 모전동, 윤직동 문경읍, 마성면

시·도	대 상 지 역
	경산시 동지역 전역 하양읍, 진량면, 자인면, 압량면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대천리 칠곡군 왜관읍, 석적면, 북삼면, 약목면, 기산면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대방동, 불모산동, 삼정자동, 안민동, 천선동, 성주동 동읍, 대산면, 북면 마산시 합포구 예곡동, 우산동, 현동, 덕동동 진전면 회원구 두천동, 회성동 내서읍 진주시 평거동, 신안동, 유곡동, 이현동, 가좌동·호탄동·판문동(기 허가구역 제외) 진해시 성내동, 남문동, 북부동, 서중동, 재덕동, 수도동, 연도동, 죽 곡동, 명 동, 원포동, 마천동, 대장동, 소사동, 남양동, 두 동, 용원동, 청안동, 안골동, 가주동 거제시 장목면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및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거제면 및 기 허가구역 제외) 사천시 동금동, 서금동, 동림동, 좌룡동 사천읍, 사남면, 곤양면 김해시 전역 밀양시 동지역 전역 삼랑진읍, 하남읍,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 부북면 양산시 동지역 전역 웅상읍,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함안군 군북면, 산인면, 칠북면, 칠원면

시·도	대 상 지 역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고래, 말홀리, 교상리, 술정리, 조산리, 도야리, 직교리, 하리, 퇴천리, 탐하리, 옥천리, 여초리, 교하리 남지읍 남지리, 마산리, 학계리, 용산리 계성면 명리, 사리, 신당리, 계성리 고성군 고성읍, 회화면 산청군 금서면, 삼자연, 단성면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함양군 함양읍, 지곡면, 안의면, 서상면, 수동면 거창군 가조면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중문·대포동중 중문관광단지로 결정 공고된 지역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성산·오조리중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로 결정 공고된지역

2. 지정기간 : 1997년 9월 7일~1999년 9월 6일

3. 신고를 하여야 할 면적

지 역	면적	
도시계획구역안	주 거 지 역	270m <sup>2</sup> 초과
	상 업 지 역	330m <sup>2</sup> 초과
	공 업 지 역	990m <sup>2</sup> 초과
	녹 지 지 역	330m <sup>2</sup> 초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270m <sup>2</sup> 초과
도시계획구역밖	농 지	1,000m <sup>2</sup> 초과
	임 야	2,000m <sup>2</sup>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500m <sup>2</sup> 초과